

신용카드 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이하 “회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한 중요 서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 제1항에 의거)
- 아래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내용과 관련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잘 읽고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회원님,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기억해주세요!

신용카드의 특징과 유사 카드와의 차이점을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한 회원의 경제적인 신용을 이용하여, 현금을 즉시 지불하지 않아도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반드시 회원이 직접 발급을 신청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는 본인의 신용한도 내에서 미리 상품을 구입하고, 정해진 날짜에 한꺼번에 갚는 상품입니다.
때문에 구매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체크카드나 직불카드와 이용한도나 할부 결제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 가능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직불카드 가맹점
발급기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	은행
이용한도	신용한도 이내	예금잔액 이내	예금잔액 이내
결제	선 구매 후 결제	구매 즉시	구매 즉시
할부 결제 이용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편·불만이 자주 발생해 숙지가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① 카드 뒷면에는 꼭 서명을 해주세요!

회원은 발급된 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곳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카드를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금액은 회원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 중 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연회비는 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연회비 부과 기간이 끝나기 전에 카드를 종도 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는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10영업일(불가피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카드 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반환금액에서 제외됩니다.

③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시 주의하세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이월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시) 지난 달 이월금액 50만원, 이번 달 30만원(일시불) 이용 시 약정결제비율(50%), 수수료율(연 17%)로 가정했을 때

청구되는 금액은 총 406,986원(①+②)이며, 다음 달로 이월되는 잔액은 40만원(③)입니다.

① 리볼빙 수수료 : 6,986원(전월 잔액(50만원)×수수료율(17%)×30일/365일)

② 청구되는 원금 : 40만원([(50만원(이월금액)+30만원(당월 이용금액))×50%])

③ 이월잔액 : 40만원(80만원(이월금액+당월 이용금액)-40만원(청구원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알아두세요.

-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에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거래가 제약되고 신용점수 등이 하락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문의사항이나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 또는 홈페이지, 앱을 통해 카드나 금융 상품에 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주의하세요.

- 겸찰 및 금융사, 가족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금을 이체하거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 상품 개요

상품명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		
연회비	국내전용	없음		
신용카드 이용한도	심사 후 부여 예정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심사 후 부여 예정	

2.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 주요 혜택 및 부가서비스

1) 정부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

유종	유류세 환급금액	연간 한도	1일 한도	1회 한도
휘발유/경유	250원			
LPG	103.01원	30만원	12만원	6만원
유의사항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가 전국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LPG) 이용 시 유종에 따라 유류세 환급 ·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의 신청자와 차량 명의자가 동일해야만 발급 가능하며, 앞면에 표기된 차량번호와 동일 차량 주유(충전) 시에만 리터당 유류세 환급 혜택 적용 · 연간 환급한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이며, 1월1일 새로이 한도 부여 · 유류세 환급제도 부정 사용 시 가산세 추징 및 환급 제외 조건, 환급세액 산정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상품설명서 참고 · 환급 대상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유류세 환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해제될 경우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로 유류세 환급 재신청 후 환급 가능				

2) 주유 할인 서비스

전월 이용금액	현대오일뱅크/SK에너지		충전소	
	청구 할인금액	월간한도	청구 할인금액	월간한도
30만 ~ 70만원 미만	200원	2만원	100원	1만5천원
70만원 이상	400원	3만원	200원	2만원
유의사항 - 해당 정유사 브랜드 및 모든 충전소(LPG) 이용 시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리터당 청구 할인 - 유류비 결제금액 기준 1회 6만원, 1일 12만원 한도 내 청구 할인 적용 - 주유 할인 서비스는 최초 신청 유종에 한해 제공되며, 그 외 유종 청구 할인 불가 - 월간 한도는 유류 판매사 브랜드 구분 없이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혜택을 받기 위한 실적 기준 금액 확인은 '앱 > 메뉴(좌측 상단) > 실적 충족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자동차 보험 할인 서비스

- 전월 이용금액 30만원 이상 시,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료 청구 할인
- 3만원 이상 결제 시 3만원 청구 할인(연 1회)

* 카드 이용 전에 참고해 주세요

- 자세한 내용 및 이용 조건은 카드 신청 전 현대카드 홈페이지 및 상품설명서, 약관 참고
- 주유 할인서비스
 - 실적 기준인 전월 이용금액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일시불 및 할부금액임
 - 신규 발급 시 발급월 포함 2개월 간 전월 이용금액 조건 없이 30만원 이상 시 실적 구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70만원 이상 시부터 해당 실적 구간 서비스가 제공 · 할부 이용금액의 경우, 할부 개월 수와 상관없이 이용 월 실적으로 합산(분할 적용 불가)
- 실적 제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연회비, 제수수료, 이자, 지방세·국세 등 세금 납부액, 도시가스요금, 대학대학원 등록금 납부 결제 건, 자동납부서비스 이용수수료, 당사의 모든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금액(모든 가맹점은 현대카드 가맹점 등록 기준으로 적용)

* 부가서비스 이용 시 참고해 주세요

1. 이행 책임: 현대카드는 부가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 및 변경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제공 기간: 카드 발급일로부터 해당 카드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제공됩니다.(단, 실적 조건 충족 시)
3. 축소·변경 시 사전 통지 방법
 -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사유 발생 시,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이메일,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변경일 6개월 전부터 2개 이상의 방법으로 매달 안내해 드립니다.
4. 제공 조건: 상품 신청 시 서비스 가입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회원께 부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 신용카드의 특성

· 상품 개요

신용카드는 신용을 담보로 이를 소지한 회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현금의 즉시 지불없이 구입할 수 있는 증표로서 회원이 발급을 신청하여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 계약기간 및 연장에 관련 사항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며, 카드 표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유효기간이 도래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신용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이용대금 상환 방법, 금리(수수료) 및 변동 여부

- 회원은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자동이체 결제 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가상계좌(대금결제를 위해 카드사가 회원별로 부여한 입금전용 계좌) 입금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 결제일은 결제 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금리(수수료율)
일시불 결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방식	-
할부 결제	할부 기간에 걸쳐 동일 금액을 분할하여 결제하는 방식	(4.2)% ~ (19.5)%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이용한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 금융서비스	(5.5)% ~ (19.9)%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정금액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대금에 대한 상환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	(4.5)% ~ (19.9)%

· 금리의 변동 여부

- 회원이 할부 결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시 이용 개월 수,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는 변동 가능합니다.

5. 수수료율

· 해외서비스 수수료 : 신용카드 해외 이용 시(해외 사이트 거래 포함) 부과하는 수수료

- 수수료율 : (0.18) %

(거래미화금액 ×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0.18%) × 전신환매도율 ** 거래미화금액에는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달러금액

· 국제브랜드 수수료 : MasterCard/VISA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수수료

- 수수료율 : (1)% ~ (1.4%) (MasterCard/Diners 1%, VISA 1.1%, AMEX 1.4%)

(거래미화금액 × 국제브랜드 수수료율 1%/1.1%/1.4%) × 전신환매도율

·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기 이용수수료

- 이용수수료 : (800) 원 ~ (1,300) 원

6. 연회비 및 연회비 반환

· 연회비 : 연회비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 연회비 청구 :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신용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연회비 반환 :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루 단위로 계산하며 회원이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 발급에 한정)에 소요된 비용

-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예시) 연회비 2만원, 반환금액 산정 제외 비용 1만원, 연회비 부과대상일수 200일, 잔여일수 20일인 경우 반환되는 연회비

$$\text{반환되는 연회비} = (2\text{만원} - 1\text{만원}) \times 20\text{일}/200\text{일} = 1,000\text{원}$$

· 연회비 반환 기한 :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7. 계약 해지 시 불이익

-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그 금액을 차감하여 반환하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신용카드 이용의 제한

-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 가맹점(국내 및 해외 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 이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이용 제한 가맹점

- 카지노
- 경마, 경정, 경륜장
- 복권방, 해외가상화폐거래소 등

9.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 필요 이상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개인신용평점이나 이용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는 경우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연체이자율 및 연체에 따른 불이익

- 연체이자율은 [회원별, 이용 상품별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로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금리는 연 3%로 최고 연 20%로 합니다.

- 단, 연체 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하는 경우 : 거래 발생시점 기준 최소기간(2개월)의 유이자할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 무이자할부 거래를 연체하는 경우 : 거래 발생시점 기준 동일한 할부 계약 기간의 유이자할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 대출 기준)

- 연체에 따른 불이익

-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신용도 하락,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 발생, 카드 이용 정지, 카드 이용 한도감액, 카드 이용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이용대금 결제일 전 이용대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채무자인 회원은 당초 지정한 이용대금 결제일까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회원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이용대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 기간 경과 후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등

· 피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등(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9조 등에서 정한 사유)

- 카드사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참고) 주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 신용카드 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연체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등

12.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위험성 및 예시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이월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등 계산 사례

(예시)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 : 50만원, 당월 신규이용금액 : 일시불 30만원,

약정결제비율 : 50%, 최소결제비율 : 10%,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 17%,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경과일수 : 30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 10만원

구분	계산 방법	금액
최소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8만원 + 6,986원 + 10만원 = 186,986원
약정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40만원 + 6,986원 + 10만원 = 506,986원
리볼빙 최소청구원금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최소결제비율	(50만원 + 30만원) × 10% = 8만원
리볼빙 수수료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365(윤년은 366)	50만원 × 17% × 30일/365 = 6,986원
리볼빙 약정청구원금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약정결제비율	(50만원 + 30만원) × 50% = 40만원

* 당월에 결제해야 할 금액은 약정결제금액이나, 최소결제금액만 결제하면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잔여결제금액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 체결 시 제공하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위법계약해지권

· 카드사가 아래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날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서면,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식(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카드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14. 민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와 관련한 의문사항 또는 불편한 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현대카드 홈페이지](http://www.hyundaiicard.com)(www.hyundaiicard.com) 또는 고객센터(1577-60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5. 신용카드 해지 신청 안내

· 회원은 카드사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를 통해 신용카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앱을 통한 해지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고객센터를 통한 경우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에 가능합니다.

· 해지 신청 방법

- 현대카드 홈페이지(www.hyundaiicard.com) > My Account > 내 카드 목록 > 카드 선택 > 해지 > 유의사항 확인 > 보유 포인트 확인 > 해지 신청 > 해지 사유 선택 > 본인 인증 > 완료

- 현대카드 앱 > 메뉴(좌측 상단) > 내 카드 목록 > 카드 선택 > 해지 > 유의사항 확인 > 보유 포인트 확인 > 해지 신청 > 해지 사유 선택 > 본인인증 > 완료

-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 > ARS 1번(개인 회원) > ARS 3번(카드 발급 및 해지) > 상담원 연결

· 해지 처리 : 신용카드 해지로 인해 탈회가 되는 경우에는 결제 대금 납부, 포인트 소멸 등을 안내하기 위해 상담 직원과 통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6.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 회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에 근거하여 대출 시점 대비 소득 증가(취업, 승진, 전문자격 취득 등), 재산(자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 서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회원이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심사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에 회원에게 금리인하 심사 결과 등을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회원은 카드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카드사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의 경우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17. 개인신용평가대응권

-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말합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
-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평가의 결과,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 방법 : 현대카드 홈페이지 > 고객지원 > 개인신용평가 결과 대응권 신청 또는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
 - 금융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 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